

# 한-EU FTA 원산지 절차 요약

구분		한-EU FTA	
발효일자		2011. 7. 1.	
협정국		EU 27개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	1. 인증수출자(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서식	상업송장 또는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월	
	제출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	
	참고사항	6,000유로 판정기준 :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기타	•원산지 신고문안(송품장 등 상업서류)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030-11-234567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②)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 ③ .....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④ ① 송품장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②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④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가가치 계산 방법	계산방법	MC (iMport Contents) 법	
	부가가치 기준	25~50%	
	기준가격	EXW (환급 내국세 공제)	
	비고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역외 가공	품목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 내용 결정	
	지역	* 관련규정 :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가공비		
제3국송장발행시		발행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반드시 수출 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 증명	검증	검증방법	간접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회신	회신기간	10개월
		회신주체	수출국 세관
	미회신 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의정서 제27조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참조</li> <li>■ 원산지의정서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li> <li>-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 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li> <li>-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li> <li>※ 대상물품 : HS 1604.20 (조제어류 및 캐비아 대용물) 등 12개 품목</li> <li>■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li> <li>-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li> </ul>	